(붙임 2)

「한국은행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
<td>제11조(자료제출) ① 금융기관이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한국은행 울산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~8호 (생략)

② (생략)</td>
<td>제11조(자료제출) ① 금융기관이 울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자료를 매월 13일까지 한국은행 울산본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~8호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</td>
<td>- 자료제출기한일 변경</td>
</tr>
<tr>
<td><<별표1>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<table>
<tr><th>전산코드</th><th>지원부문</th><th>선정기준[1)]</th></tr>
<tr><td>A8</td><td>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</td><td>- 지역주력산업(그린모빌리티, 스마트조선, 미래화학신소재, 저탄소에너지)중 <<별첨>>의 업종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
-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한 ‘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추천서’를 제출한 기업</td></tr>
</table>
주 : 1~3) 생략</td>
<td><<별표1>>

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

<table>
<tr><th>전산코드</th><th>지원부문</th><th>선정기준[1)]</th></tr>
<tr><td>A8</td><td>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</td><td>- 지역주력산업(그린모빌리티, 스마트조선, 미래화학신소재, 저탄소에너지)중 <<별첨>>의 업종을 영위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
-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 발급한 ‘울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추천서’를 제출한 기업
-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하는 ‘이차전지 관련 업종[4)] 확인서’를 제출한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</td></tr>
</table>
주 : 1~3) (현행과 같음)
주 : 4) 이차전지 관련 업종 범위는 축전지제조업(산업분류코드:28202)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광물, 소재(양극재, 음극재, 전해질, 분리막 등), 관련 부품·장비 및 기술 등을 모두 포함</td>
<td>- 전략지원부문 중 울산테크노파크에서 발급하는 ‘이차전지 관련 업종 확인서’ 제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</td>
</tr>
<tr>
<td><<신 설>></td>
<td>부 칙 (2023. 12. 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td>
<td>- 부칙신설

- 시행일 명시</td>
</tr>
</table>